7 · 신청방법

진료	• 입원결정(응급, 행정입원) • 외래진료(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진료
서류준비	• 환자·보호의무자 및 기관 직원(의료기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이 신청서 작성 • 신청 구비서류 준비
신청	• 환자·보호의무자 또는 기관 직원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신청결과 회신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대상자에게 지원 대상 여부 통보
치료	•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치료비 지급	• 지원 결정이 된 환자의 치료비를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게 치료비 지급

※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납부완료한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가능

8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



Q&A



Q 응급, 행정입원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한가요?

A 네. 응급, 행정입원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자에 따라 지원항목의 차이가 있으므로 관내 보건소·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외래치료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외래진료를 받는 일반 대상자도 치료비 지원대상자 인가요?

A 아닙니다. 외래치료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거해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대상자입니다.

Q 응급·행정입원을 하였는데, 코로나검사도 받았습니다. 코로나 검사비도 지원이 되나요?

A 네. 입원을 위하여 진행한 검사이므로 치료비 지원이 됩니다. 다만 환자분의 보험가입종류(건강보험, 의료급여, 차상위 등)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Q 발병초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외래비, 입원비 모두 지원이 되나요?

A 발병초기지원은 외래비만 해당됩니다. 방문하신 의료기관 원외처방된 부분도 서류를 구비하시면 지원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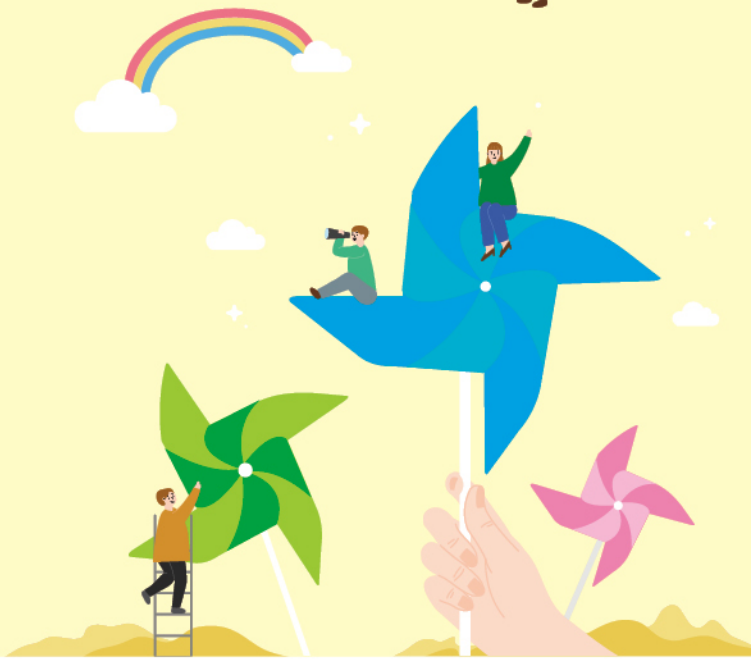
OPEN 출처표시 영리목적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민의 마음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국민을 위하여
국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 지원대상

✓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중
지원유형에 해당되고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 소득기준

지원유형		소득기준
응급입원	입원비	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외래비	
발병초기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인 가족의 경우 6,145천원 이하)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당연 지원

2 · 지원금액

✓ 모든 지원유형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 신청기간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
(가능한 1개월 내 신청 권장)

4 · 지원종류

✓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지원

지원유형		내용
응급입원 (법 제50조)	입원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입원을 하는 경우
행정입원 (법 제44조)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하는 경우
외래치료지원 (법 제64조)	외래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발병초기 (법 제11조)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 발병초기 정신질환
-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환자
- 해당진단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5 · 지원범위

구분	지원범위
건강보험 가입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 요양급여 중 비용의 일부
* 비급여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 및 급여항목 내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항목)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검사비 등

6 ·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 서류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의료기관용) • 본인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외국인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득증빙 등)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병원용)
응급 행정	• 입원(응급·행정)확인서
발병 초기	•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최초 진단연도 명시)
의료 기관	(의료기관 신청시) •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1회)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1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로 확인가능한 서류

공통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증명서(의료급여 포함)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지역)

